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 - 36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 사업목적

해외진출 희망기업 현지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적 시행
 착오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자격)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진출분야)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 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 사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농기자재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농식품가공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연구개발(R&D)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기타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우선지원 대상(가점 적용사항)

- 정책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배추)을 해외농업자원으로 개발하는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전담기관 또는 사단법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수행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보조사업에 최초 지원하는 자
- 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ESG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타 기관 사업(R&D 등)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지원 제한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422호)」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3. 지원기업 선정 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로 선정
 - 정량평가(20점) : 재무건전성 등 경영상태
 - 정성평가(80점) : 서면심사(사업계획서, 사업의 타당성 등) 및 면접심사 (발표, 질의응답 등)
 - 우선대상자 선정은 평가결과 집계 점수의 70점 이상인 자로 하고,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

- 평가 결과 지원대상 선정된 기업 중 평가단으로부터의 보완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내용에 합의하는 경우 최종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최종선정대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득점순으로 결정
- 면접심사 대상자, 일정, 필요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
- 결과발표 : 개별 서면 또는 유선 통보
- 선정 제한 사유

- <선정 제외 대상> ---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내용의 사업목적. 사업 대상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실증시험, 적응성 검정 등의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본 지원사업과 동일한 건으로 해외사업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보조금 지원

가. 지원기준

- o 해외 현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농지임차, 자재비 등)의 일부 지원(70% 이내)
 - 지원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당해 연도 집행한 직접비만 지원)
 - 단, 최근 5년간 보조금을 3회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을 직접비 50% 이내, 연간 최대 30백만원으로 적용
 - * 다년도(2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 재신청 하여야 함
 - * 공고일 현재('25.3.5.)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본 공고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투입된 사업비만 보조금 지원 가능
 -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50백만원)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나. 지원항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소요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보조금 지급 방법

- ㅇ 보조금 지급
 - 선금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2 범위 내 지급
 - 잔금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라. 조사결과 확정 및 활용

-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담기관 또는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감수를 통해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확정
-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담기관이 보관하고 평가 및 시행을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

마. 사후 관리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52호)」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80조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에 따라 처리

5. 사업시행

- 사업기간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결정
- 시행기한 : 지원 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 ㅇ 결과보고회 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 사업결과보고서: '25. 11. 28.(금)까지 초안 제출하고 결과 보고 발표 후 보완을 거쳐 '25. 12. 5.(금)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서: '25. 11. 28.(금)까지 증빙자료 등 초안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 '25. 12. 5.(금)까지 정산서 제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추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6. 사업 신청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u>2025. 3. 5.(수) ~ 3. 26.(수) 18:00 까지</u>
- o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u>'25. 3. 26.(수)</u>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문의전화: 061-338-6474 / e-mail: 2160268@ekr.or.kr

ㅇ 제출서류

- 1.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4.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5.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서식) 1부
- 6.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 7. 서류평가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 첨부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사본은 반드시 신청업체의 원본대조필 날인
- ※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실시. 단,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7.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기업(사업)은 평가단 심의를 거쳐 결정
- ㅇ 선정절차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 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에 따름

<첨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1부.